

소방안전학부 졸업논문 내규

제 정 : 2006년 9월 1일
1차 개정 : 2019년 9월 27일
2차 개정 : 2021년 9월 15일
3차 개정 : 2023년 9월 26일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학부의 졸업논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논문) 졸업논문은 졸업논문시행 규칙에 따른다.

제3조(졸업논문의 대체)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학시험 성적, 자격증으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어학성적) ①어학성적으로 논문을 대체할 경우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학 중 취득한 어학 성적은 점수로써 유효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1. TOEIC 550점 이상
2. 지텔프 Level.2 43점 이상

제5조(자격증 및 합격증) 다음 각 호의 자격증 및 합격증을 취득한 경우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1. 소방관련 기사 자격증(행정안전부고시 소방공무원(간부후보생 포함) 임용시험에서 3%이상 가산혜택이 주어지는 자격증에 한함)
2. 공무원 합격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기준에 따른 공무원에 한함)